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

주체112(2023)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21호로 채택

제 1 장 상품류통법의 기본

제 1 조 (상품류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류통법은 상업망의 조직, 운영과 상품의 확보, 공급, 판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역할, 조절통제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 바지 한다.

제 2 조 (정의)

상품류통은 상품류통망을 통하여 여러가지 소비상품을 확보하여 인민들에게 공급, 판매하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문이다.

상품류통망에는 도매상업기업소, 상점, 전자상점, 상품전시회 같은것이 속한다.

제3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원칙)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상품공급 및 판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상품공급 및 판매부문의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친절히 봉사하도록 한다.

제4조 (상품보장원칙)

국가는 상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정확히 장악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상품들을 조성, 확보하여 상품류통망에 집중시키도록 한다.

제5조 (상품등록, 인증체계확립원칙)

국가는 사회주의상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 수입한 상품이 국가적인 상품등록, 인증체계안에서 류통되도록 한다.

제6조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통일적장악지도원칙)

국가는 상품류통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상품류통사업

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며 사회주의상업에 저해되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적현상들을 철저히 반대배격하도록 한다.

제7조 (상품류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상품류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8조 (적용대상)

이 법은 소비상품 (이 아래부터 상품이라고 함.) 을 생산, 수입하거나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상품류통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 2 장 상품류통체계

제9조 (상품류통체 계획립에서 나서는 기본요구)

사회주의상업의 성격에 맞는 상품류통체계를 세우는것은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주문제를 바로 실시하고 상품공급과 판매를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체계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제10조 (상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판매계획작성)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수요를 연구하여 상품주문서를 만들며 그에 따라 상품의 생산과 수

입, 공급 및 판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생산, 수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국가계획대로 생산, 수입하여 상품류통망에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제 11 조 (상품의 등록)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품등록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 수입한

모든 상품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 (상품의 분배)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부터 중앙지표의 상품배정계획을 받아 도 (직할시) 별로 분배 하여야 한다.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이 배정한 상품과 지방지표의 상품을 시 (구역), 군별로 분배하여야 한다.

제 13조 (생산한 상품의 류통)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한 상품을 장악하여 국영 상품류통망을 통하여 류통시켜야 한다.

제 14조 (지역별균형보장이 필요한 상품의 류통)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 판매하여야 할 지표의 상품을 해당 지역의 도매상업 기업소를 통하여 류통시켜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생산, 소비되는 상품, 시 (구역), 군별로 생산이 전문화된 농토산물, 생산지로부터 수송거리가 가까운 상품은 지표에 관계 없이 해당 시 (구역), 군상업 기업소를 통하여 류통시켜야 한다.

제 15조 (상품공급계약)

상품공급자와 수요자는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어김 없이 리행하여야 한다.

제 16조 (상품대금지불)

상업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넘겨받은 상품의 대금을 계약된 기일 안에 지불하여야 한다.

상품대금을 계약된 기일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상품대금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강제로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제 17조 (상품에 대한 신용보증제)

전기용품, 전자제품 같은 일용상품 (수입상품 제외) 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

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상품품종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제 18조 (필수소비품가격의 일원화)

중앙가격 지도기관은 중앙상업 지도기관이 정한 지표와 품종, 규격의 필수소비 품의 가격을

전국적범위에서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 19조 (상품예비의 조성)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연재해, 전시동원, 비상방역 사업 같이 특수하게 제기되는 사업에 필요한 상품예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에 상품예비조성과 관련한 재정계획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 20조 (수입상품관련자료의 통지)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상품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가 주민판매용으로 들어온 상품의 품종과 수량에 대한 자료를 상품반입시점에서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중앙상업 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 21조 (상품류통의 정보화)

중앙상업지도 기관과 중앙정보화지도 기관은 상품등록정보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상품류 통의 정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 22조 (질낮은 상품의 처리)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류통망에서 가짜 상품, 불량 상품, 질이 낮은 상품이 공급, 판매되는 경우 제때에 전량 회수하여 재생산가능한 상품은 퇴송하고 일부 리용가치가 있는 상품들은 무상으로 필요한 단위들에 공급하며 나머지 상품들은 소각, 매몰, 폐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짜상품, 불량상품, 질이 낮은 상품을 회수하여 퇴송, 무상공급, 소각, 매몰, 폐기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이 법시행규정, 세칙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 3 장 상품류통망의 조직

제23조 (상품류통망조직의 기본요구)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상업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상품수요와 편의,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품류통망을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요구대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제 24조 (상품류통망의 배치)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와 류동인구수, 교통발전정도 같은 상품류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타산한데 기초하여 상품류통망배치기준을 바로 정하고 여러가지 형태의 상품류통망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상품류통망은 살림집기단층에 배치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25조 (도매상업 기업소의 조직)

도매상업 기업소의 조직은 중앙상업 지도기관이 한다.

제 26조 (상점의 조직)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점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상업 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데 따라 해당 기구조직기관의 기구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서는 상점을 내올수 없다.

제 27조 (상점의 등록)

새로 조직된 상점은 정해진데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상점에 대한 영업허가기관)

상점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점은 운영할수 없다.

제 29조 (영업 허가신청)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시 (구역) ,
군인 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시 (구역) , 군인민위원회는 신청문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현지료해를 진행
하고 상 점이 규정대로 꾸러졌을 경우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판매지표, 봉사능력, 봉사시설
위 치, 조직근거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 기관의 합의 및 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영업허가신청문건의 심의)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안
으로 심의 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 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도 (직할시)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의 처리정형을 중앙상업지도 기
관에 정 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자상점의 업종승인)

정보기술적기 반이 마련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자
료를 게시하고 그에 따라 상품판매를 실현하는 가상적인 상품류통망 (이 아래부터 전
자상점이라고 함.) 을 운영할수 있다.

전자상점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중
앙 정보화대상심의위 원회 에 대상심 의문건을 제출하여 심 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정보화지도기관은 심의에서 승인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자상점을 운영할수 있
는

업종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제32조 (전자상점의 봉사형태)

전자상점의 봉사형태에는 직접판매형식과 대리판매형식이 있다.

직접판매형식은 전자상점에서 자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형식이며 대리판매 형식은 전자 상점에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품을 대리판매하는 형식이다.

제33조 (상품전시회의 조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품전시회를 조직할수 있다.

상품전시회는 부문별, 지역별, 계절별, 상품품종별로 조직한다.

제34조 (상품전시회의 조직승인)

상품전시회를 조직하려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상품류통망의 운영

제 35조 (상품류통망운영의 기본요구)

상품류통망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이 아래부터 상업 기업소라고 함.) 는 인민들의 상품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필요한 상품을 넉넉히 확보하며 상품의 보관 관리와 공급, 판매에서 책임성과 봉사성을 높여 인민들의 소비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제 36 조 (상품확보)

상업 기업소는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상품주문을 받아 생산, 수입에 맞 물리고 계획된 상품을 전량 확보하여야 한다.

제 37조 (상품의 수송, 송달)

상업 기업소와 운수기업소는 상품을 수송계획과 주문계약에 따라 수송, 송달하여야 한다.

전자상점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된 상품을 주문계약한 시간안에 주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38조 (상품검수와 입출고)

상업기업소는 상품검수와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고 현물에 의한 경상관리를 잘하여 상품 유통과정에 사고를 없애야 한다.

상품의 손실과 검수과정에 발견한 사고는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 39조 (상품보관관리)

상업 기업소는 상품보관관리에 필요한 창고와 시설을 기준대로 갖추고 상품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 40조 (상품의 포장용기)

상업기업소는 자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상품품종별포장용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 41조 (상품의 실사)

상업기업소는 상품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품실사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제42조 (상품의 진렬, 조명, 광고)

상업 기업소는 상품진렬, 광고와 조명을 문화성있게 하여야 한다.

상품광고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 43조 (봉사성 보장)

상업기업소는 이동봉사, 주문송달봉사 같은 여러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받아들여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상업기업소의 봉사자는 높은 인민성을 지니고 언제나 인민들에게 문화성있고 친절하게 봉

사하며 상품의 질에 대하여 정확히 소개하여야 한다.

제44조 (가격표의 게시)

상업 기업소는 봉사장소들에 국가가격기관이 인증한 가격 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가격 표에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45조 (상품에 대한 의견접수)

상업 기업소는 인민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의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상품의 질과 봉사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46조 (상품정보의 게시)

상업기업소는 전자상점을 운영하면서 상품정보를 정확히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상점의 상품정보에는 상품화상자료, 품명, 상표, 생산지, 유통기일, 상품재고, 규격, 가격, 송달방식, 연계인, 사용자평가자료, 사용방법, 대금결제기능, 주의사항 같은 것이 속한

다.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게시하거나 충분히 게시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 오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 47 조 (상품판매 자료의 보관)

전자상점을 운영하는 상업기업소는 상품판매와 관련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 48조 (상품전시회의 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 수입한 상품을 상품전시회에 출품시켜 직접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상품전시회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 (상품판매에서의 금지사항)

상품판매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가짜상품, 불량상품, 질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2.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어긋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민에게 무데기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영업허가증에 지적된 판매지표밖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5.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6.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7.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물자교류시장에서 소비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9. 공민이 비법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제품정보매체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 상품에 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11.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 (수매상품 제외) 을 판매하는 행위
12. 이밖에 법규에 어긋나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제 5 장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50조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상업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상품류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상품을 국가수중에 장악하고 원활하게 류통시켜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 51조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지도)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

회가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영상품류통망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체계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상품류통망에 대한 2중적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상품류통사업 전반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규정, 세칙, 지도서의 작성, 시달, 비상설상업협회의 운영)

중앙상업지도기관은 상품류통사업과 관련한 규정, 세칙, 지도서를 비롯한 국가 관리문건을 통일적으로 작성, 시달하며 비상설상업협회운동을 통하여 상품류통사업에서 제

기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총화대책 하여야 한다.

제 53 조 (봉사조건보장)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류통망의 봉사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상품류통부문의 자금과 상품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빼돌리거나 봉사시간에 봉사자들을 봉사 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켜 봉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수 없다.

제 54 조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상품류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상업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상업정책 집행 형태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5 조 (민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 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

제 56 조 (변상처벌)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거나 상품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분실, 부패, 변질, 파손시켰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제 57 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 정해진 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 만~150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2.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개별적공민에게 무데기로 넘겨주었거나 개별적 공민이 그것을 넘겨받아 판 경우 거래액의 2~10배
3. 이 법 제49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 액의 2~5배

4.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00만원
5. 전자상점에서 상품정보를 거짓으로 게시하거나 충분히 게시하지 않아 수요자를 기만, 오도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6. 상품공급자와 수요자가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0만~150만원
7. 상품을 주문계약한 시간안에 송달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만~5만원

제 58 조 (중지 처벌)

이 법 제57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시킨다.

제 59 조 (몰수 처벌)

비법적으로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자금과 상품을 몰수한다.

제 60 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수요를 고려함이 없이 상품유통부문의 계획을 작성, 시달하였을 경우
2. 상품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3. 생산, 수입한 상품을 상품공급계획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4.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을 어겼을 경우
5. 상품 (수매상품 제외) 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유통시켰을 경우
6. 신용보증제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7. 정해진 상품예비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8. 체화되었거나 못쓰게 된 상품, 질이 낮은 상품을 제때에 회수,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9. 상품류통망배치를 바로하지 않아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었을 경우
10. 영업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
11. 상품전시회를 자의대로 조직하였을 경우
12.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였거나 상품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거나 상품의 공급, 판매에서 정해진량을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3. 상품의 보관관리, 실사를 바로하지 않아 상품을 분실, 부패, 변질, 파손시켰을 경우
14. 상품광고에서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상품의 질과 봉사에 대한 의견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6. 국가가격기관이 인증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17. 가격을 제정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18. 제정, 등록된 가격을 어기고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19. 상품류통부문의 자금과 상품을 여러가지 명목으로 빼돌리거나 봉사시간에 봉사자들을 봉사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동원시켜 봉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61조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